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서 울 지방법원

2000. 6. 2	시국총소자 등향파악기록에 대한
2000. 6. 2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판결문(내부)

이 사건을

1. 행정사건 제 2 민사부

판 결 2. 3. 6호증, 7호증의 각

기재와 달리 증인 임수광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법

사 건 99나5495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항소인 및 당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원고본인질문결과(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고, 피고, 항소인 음 영 천

증명의 진위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척되는 당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의 73

원고는 증인 임수광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가, 원고는 전국대학교 현장경력자 3학년에 다니다가 졸학 중이던 1987. 6. 12.경 서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원에서 시위를 한 힘으로 결과 및 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포되어 구속된 후, 같은 달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17.경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같은 달 28.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소송수행자 장광성, 이정육, 문복식

나. 서울지방법원은 1992.경 행법 중 대안·회환·소요죄와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시

변론 종결 2000. 5. 17.

위에 관한 법규위반, 기타 공안관개입을 입한 자를 법한 자를 이른바 "공안사법"으로 분류하고,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선고 99가소31010 판결

각 행정서에 대하여 각 그 경내에 기수하고 있는 공안사법을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여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공안사법 출소자 등향파악 자서"를 하였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도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이 관리하는 등향파악 대상자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
문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1992. 5. 25.경부터 종암경찰서에 대하여 원고의

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97. 3. 31.경 "공안사법 출소자 등향파악"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부, 전출서 전출근거” 등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임수광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당심 증인 임수광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에 다니다가 휴학 중이던 1987. 6. 12.경 서울시내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같은 달 17.경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같은 달 29.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은 1992.경 형법 중 내란·외환·소요죄와,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타 공안관계법률위반죄를 범한 자를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각 경찰서에 대하여 각 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안사범들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도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후 서울지방검찰청이 관리하는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1992. 5. 25.경부터 종암경찰서에 대하여 원고의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97. 3. 31.경 "공안사범출소자 동향파악"

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의 좌경의식 포지 정도, 문제단체에 가입 활동여부, 학원소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기타 재범 또는 불순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전출시 전출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같은 해 4. 26.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종암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5. 2. 원고의 재산상황, 직장,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관계, 위 지시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내용을 보고받는 등 같은 해 12.경까지 2월에 1회씩 이러한 동향파악 활동을 계속하여왔다.

라. 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소외 임수광은 1994.경 원고의 동향파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고의 담당 형사가 되었음을 밝힌 다음 그때부터 원고가 서울 강북구 미아 5동에서 같은 구 미아 8동으로 전출한 199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동향파악 활동의 일환으로 1년에 4~5번 정도 원고의 집과 직장에 전화를 걸어 원고의 직업, 직장, 회사의 위치, 출퇴근 시간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원고가 직장관계로 집에 없을 때에는 그의 가족과 통화를 하여 원고의 동태를 파악하였다 (원고는 그밖에도 임수광이 1996.경 원고를 다방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원고를 만나 원고로 하여금 양식서 1장에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직업, 직장, 봉급수준, 사회단체나 정당에의 가입여부, 교우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게 하기도 하였다 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왔다.

바. 임수광은 서울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면서, "좌경의식 포지정도"란에는 "대학시절 어린 마음에 순간의 과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과 직장에만 충실하고 있음"으로 기록하는 등 피고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생 때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되어 단 한 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그로부터 10년 동안이나 피고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이 파악되어 왔고, 그러한 피고의 경찰작용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동태파악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의 가족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사실을 살펴본 때, 원고는 대학교 재학 시절 단 한번의 집회및시위 피고가 원고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온한 방법으로 1년에 1~2번씩 안부전화를 통하여 그의 현재 동태를 문의해 왔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는 지극히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일 반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관찰과 정보 수집은 경찰관의 직무로서 인정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같은 피고의 동향파악 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동향파악 행위로 인하여 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로서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우범자나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관찰이나 동향 파악을 할 수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작용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렇기 위하여서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①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② 그 수단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며, ③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하여야 하고, ④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제한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는 피해를 형량하여 그들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사실을 살펴볼 때, 원고는 대학교 재학 시절 단 한번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10년동안 원

고를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그 주소지 경찰서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을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받아왔다. 비록 피고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와의 전화 내용만을 통해 평온한 방법으로 그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죄책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동향파악 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는 목적 달성을 적합하거나, 필요한 국가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동향파악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과 비교형량해 볼 때 균형을 이룬다고도 볼 수 없다. 담당 경찰관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담당 형사임을 밝히면서 근황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도,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 수단의 면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작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동향파악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동향파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의 죄책과 그 당시의 사회환경, 그 후 원고의

생활태도, 피고의 동향파악 행위의 기간 및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금 2,000,000원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28.

재판장 판사 권오곤 _____

판사 김경희 _____

판사 한진수 _____

정 본 입 니다.

2000. 7. 10

서 울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박 경희

